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3. 2017고합1162, 2017고합1204(병합), 2017고합1255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7인

【검 사】조광환(기소), 김태훈, 인훈, 안성민, 허훈, 권찬혁, 한지혁, 김성훈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한중 외 8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(대판: 피고인 3)]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.

[피고인 2(대판: 피고인 4)]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,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3(대판: 피고인 2)]

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,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4(대판: 피고인 1)]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5]

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.

[피고인 6]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.

[피고인 7]

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.

[피고인 8]

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,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, 2012. 12.

16.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